의안번호	2215805
의 뢰 인	박대출의원
회 답 일	2026. 1. 27.
추계번호	25B7417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4.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의 기본방향 6. 재원조달 방안 7.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 제15조(개발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3항) 1. 인구수용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4. 교통처리계획 5. 도시문화계획 6. 경관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9.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개선 및 설치계획 10.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1. 예정지역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재원조달계획 13. 예정지역등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안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항)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의무규정
7	안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21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사업시행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둠 1. 제8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8. 제30조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의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 10. 제4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45조에 따른 해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의무규정
10	안 제27조(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시장・군수 중 1명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됨(제3항)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됨(제6항)	
11	안 제29조(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의 설치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둠(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3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31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예정지역등 안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34조에 따른 차입금 7.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의무규정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입지할 우주항공청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43조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9.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14	안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시설을 국토교통부에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34조(차입금)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3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38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18	안 제40조(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분야 기술·학문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우주항공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제4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항공분야 국내외 연구기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우주항공캠퍼스에 둘 수 있음.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의무 규정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함(제6항)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우주항공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주항공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8항)	재량규정
19	안 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0	안 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구역의 입주 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입지보조금 2. 고용보조금 3. 고용훈련보조금 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1	안 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2항)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음(제3항)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 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라 입주 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5항) 1. 투자진흥지구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22	안 제48조(손실보상)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3	안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등(안 제19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의 설치 등(안 제29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안 제30조)[1],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안 제38조),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안 제40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43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안 제46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안 제47조) 등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 및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이후 아직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입지, 규모, 필요 시설의 종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유사 사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2007~2030년, 2025년말 현재 불변가격 기준 국비 4.42조원 집행)이 있음. 해당 법률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2]”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안의

---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291호) 의결 전제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우주항공분야의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족도시[3])”와는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이 다르지만, 기본계획·개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토지등의 수용, 캠퍼스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의 설치 등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여 제정안의 추가재정 소요의 추정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의 집행 내역을 참고해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집행현황

[표 1] 제정안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의 유사 조항 비교

제정안 조문	「행복도시법」 조문	「행복도시법」 예산 집행 내역(2025년말 기준)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행정도시건설사업(1032-509) 3,775백만원
제15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행정도시건설사업(1032-509) 2,531백만원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LH)가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승인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동구 설치(1032-303) 48,314백만원(지출한도 외)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사업시행자(LH)가 수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물 등 건립 시 LH로부터 토지 구입
제31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20,483백만원
제40조(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공동캠퍼스공익법인 운영(1031-515) 1,871백만원

3) 제정안 제6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우주항공분야의 산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선도할 수 있는 자족도시(自足都市)
2. 우주항공분야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3. 우주항공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교육도시
4. 주변 자연여건과 연계하여 우주항공 관련 전시·체험·관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우주항공 문화관광도시

제정안 조문	「행복도시법」 조문	「행복도시법」 예산 집행 내역(2025년말 기준)
–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1031-302) 1,946백만원(지출한도 외) - 광역도시계획과 연계된 연구용역 등 포함
–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종합사업관리(1032-304) 연간 18억원 수준(지출한도 외) 자족기능유치지원(1032-301) 연간 3~10억원 수준(지출한도 외)
–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주변지역지원사업(1043-301) 28,250백만원(지출한도 외)
–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주민직업전환교육(1032-502) 4,067백만원(지출한도 외) 행복아파트건립(1032-305) 54,960백만원(지출한도 외) 경로복지관건립(1032-306) 14,891백만원(지출한도 외)
–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236억원)

주: '지출한도 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설정된 지출 한도[4]에 포함되지 않는 집행액임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집행현황 (2007~2025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8.5조원 한도 내에서 국가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2025.12.31.까지 불변가격 기준 4.42조원(52%) 집행된 상황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사업	금액
중앙행정기관	정부청사	11,736
	컨벤션센터	486
	총리공관	258
	복합편의시설	1,479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신청사)	1,810
	소계	15,771
광역교통시설	설계비 등	186
	오송역	2,178
	대전유성	1,612
	대덕테크노	2,809
	정안IC	2,048
	행복도시-공주	1,431
	청원IC	474
	청주시	1,089
	행복도시-조치원	754
	오송-청주공항	889
	오송-청주	1,037
	행복도시-부강역	473
	오송-조치원	329
	외삼-유성복합터미널	440
	조치원 우회	6
	회덕IC	231
	부강역-북대전IC(2021 신규)	33
	광역교통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31
	환승주차장	125
	BRT	50
	공공자전거	2
	소계	16,227

구분	사업	금액
국가행정시설	대통령기록관	681
	국립도서관	636
	선관위(2019 종료)	55
	경찰서 (2)	197
	세무서 (1)	169
	국회세종의사당(2019 신규)	14
	국가재난대응시설(2021 신규)	88
	도담어진지구대(2021 신규)	28
	세종경찰청 청사	104
	세종경찰특공대	3
	소계	1,975
지방행정시설	시청사	775
	교육청사	294
	소방서청사	88
	창의진로교육원(지방 교육시설)	142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2019 신규)	41
	평생교육원(2020 신규)	188
	1~6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4,925
	과학문화센터	9
	소계	6,462
복지시설	1~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035
	소계	1,035
문화체육시설	아트센터	607
	국립박물관단지	1,176
	소계	1,783
교육시설	학교시설	741
	소계	741
기타시설	지식사업센터	146
	기본계획	33
	개발계획	22
	소계	202
합계		44,195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격별 집행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사업	금액
용지비	광역도로(오송청주)	5,007
	중앙행정	3,126
	공공시설(의사당, 경찰청, 박물관)	3,018
	기타시설	31
	소계	11,183
용지비 제외	광역도로	11,219
	중앙행정	12,645
	공공시설	8,977
	기타시설	171
	소계	33,012
합계		44,195

주: 불변가격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